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7호 2023. 11. 20.(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3-3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배수설비 폐쇄 등 변동사항 발생시 배관 및 공공오수맨홀의 마감
처리 확인 근거의 부재로 공공오수관로 내 불명수 유입 우려가
큰 실정
- 나. 이에 따라, 기존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신고서를
변경하여 공공오수관로 내 우수 및 지하수의 유입을 막아 쾌
적한 생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신고서 변경(안 별지 제13호 서식)

- ‘시공사진 등 신고사항 입증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
- 신고서 처리기한 조정 : 즉시 → 3일
- ‘하수번호’등 불필요한 기입란 삭제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ddoddossg@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전화 : 054-650-6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						처리기한 3일	
사 용 자	상 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상수도 기타(지하수 및 복류수 등)					
	배 출 량	생활하수	m ³ /일		사업장폐수	m ³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m ²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 ³ /H	
		양수능력	m ³ /일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m ³ 특 기 사 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시공 사진 등 신고사항 입증자료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맑은물사업소	작 성 자	이름	성 시 현
	부서장	김 호 태		직급	환경8급
	팀 장	지 휘 근		연락처	054-650-6983
				이메일	ddoddossg@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하수도법」 제27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주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	-	입법예고	
	관련부처	환경부	-	입법예고	
5. 규제 존속기한	법령 변경·폐지 등 규제가 존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민원 처리기한 연장)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신고서 처리기한 연장 - 기존 : ‘즉시처리’ → 개정 : ‘3일’				
8. 참고사항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신고서 처리 기한 연장

- 기존 : '즉시처리'→ 개정 : '3일'

3.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배수설비 폐쇄 신고 수리 시 폐쇄되는 배수설비와 배관(또는 공공 오수맨홀)의 연결 부분의 마감 상태를 확인 한 후 수리해야 함. 그러나 배수설비 신고 처리기한이 '즉시처리'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 시간이 부족하여 마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신고수리를 하게 되면 공공오수관로내 불명수의 유입 우려가 큼
- 이렇게 유입된 불명수로 인하여 하수 정화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수질환경 보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
- 배수설비 사용 중지 및 재사용 신고수리 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거주 사실 및 배수설비 설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나, 현장 확인 시간이 부족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배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현장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부적정 시공 및 부실한 마감 처리를 보완지도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맑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처리기한을 '3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 처리기한 연장으로 하수도 사용자와 배수시설 설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수도 사용 요금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함.

다. 대안검토

- 규제의 강화 이외의 방법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라. 기대효과

- 주민 거주 환경 개선 및 수질환경 파괴 예방
- 정확한 하수도 요금 부과 및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현행 신고사항에서 처리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주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
- 하수도 요금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여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등에 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객관성

- 위임근거 검토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⑥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6. 결론

○ 공공오수관로내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수질환경 파괴 예방 및 하수도 요금 부과의 정확성을 위해 현행 배수설비 (폐쇄, 사용중지, 재사용) 신고 처리기한 '즉시처리'에 대하여 '3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